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11. 18.

다. 상정일자: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11. 2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 가. 제안이유

기금 존속기한 도래(2024. 12. 31.) 및 지원 신청자 부재로 인해 존  
치 실효성이 없는 기금을 폐지하여 잔여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0. 결과: 의견 없음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폐지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 존속기한 도래(2024.12.31.) 및 지원 신청자 부재로 인해 존치 실효성이 없는 기금을 폐지하고 잔여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폐지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폐지 배경으로는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이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기금 활용도가 낮고 관리 비용 대비 운용 성과 미흡으로 기금 운용 실효성 저하, 국가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 중인 거리가게 지원 및 도시미관 개선 사업과 중복 가능성 존재, 유사한 기능의 지원 사업이 다른 법령 및 제도로 대체 가능성, 폐지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 소모 방지 등으로 본 기금의 폐지를 통해 잔여기금을 다른 구정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됨.
- 폐지의 기대 효과로 관리 대상 기금 폐지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행정 및 재정 효율화 효과, 거리가게 자립 및 지원 정책을 다른 법령과 제도로 일원화하고 국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 체계의 통합, 거리가게 기금을 효과적인 구정 사업으로 재배치, 현장 실정의 맞춤형 지원 정책 수

립 가능으로 정책 재조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해당 기금의 운용 실적이 미흡하며 운용 유지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 및 국가의 대체 가능한 지원 제도가 이미 존재하여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또한, 폐지 이후 기금 잔액의 명확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한 행정 운영을 보장하고 예산 활용 계획에 대한 구의회 보고를 통해 재정 처리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 폐지 이후에도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지원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별표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